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2. 9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2.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99. 12.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류인섭)

가. 제안이유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 우리 시도 적극 동참코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근거로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 관련조항을 부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서식)
(현행 : 판매인 지정 ⇒ 판매인 계약)
-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인감계 첨부조항을 주민등록증사본 첨부로 개정(안 제9조제②항)(현행 : 인감계 첨부 ⇒ 주민등록증사본 첨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호
의결년월일	99. 12. 24 (제75회)

제출년월일 : 1999. 12.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 우리 시도 적극 동참코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 관련조항을 부분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서식)(현행 : 판매인 지정 ⇒ 판매인 계약)
-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인감계 첨부조항을 주민등록증사본 첨부로 개정(안 제9조제②항)(현행 : 인감계 첨부 ⇒ 주민등록증사본 첨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을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이 지정한 판매인”을 “동장과 계약한 판매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중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을 “판매인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으로 한다.

제7조4항중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으로 한다.

제8조중 “판매인으로 지정”을 “판매인으로 계약”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을 “판매인 지정 신청”을 “판매인 계약 신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및 “지정신청서”를 “판매인으로 계약하고자” 및 “계약신청서”로 하고, “판매인 지정은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지정은 동장에게”를 “판매인 계약은 시장에게 기타 판매인 계약은 구청장, 동장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및 “인감계와 판매중사원”을 “판매인으로 계약하고자” 및 “주민등록증사본과 판매중사원”으로 하고, “위임받는 자의 인감계”를 “위임받는 자의 주민등록증사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및 “판매인 지정서”를 “판매인을 계약하였을 때에는” 및 “판매인 계약서”로 한다.

제9조제4항중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을 “판매인을 계약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장이 지정하는”을 “시장과 계약한”으로 한다.

제11조중 “판매인 지정서” 및 “시장, 동장에게”를 “판매인 계약서” 및 “시장, 구청장, 동장에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을 “지정의 취소”에서 “계약의 해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그 지정을 취소”에서 “그 계약을 해지”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지정판매인”을 “계약판매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지정을 취소”를 “계약을 해지”로 한다.

제17조중 “판매인으로 지정된”을 “판매인으로 계약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시”를 “판매의 폐지 및 계약의 해지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별지 서식 제1호를”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별지 서식 제1호중 “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를 “수입증지판매에관한계약체결신청서”로 하고, “판매인으로 지정” 및 “인감계, 신원보증서”를 “판매인으로 계약” 및 “신청인 주민등록증사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중 “수입증지판매인지정서”를 “수입증지판매인계약서”로 하고, “판매인으로 지정함” 및 “수입증지판매소 지정위치”를 “판매인으로 계약함” 및 “수입증지판매소 계약위치”로 한다.

제11조 별지 제8호서식중 “지정번호” 및 “지정년월일”을 “계약번호” 및 “계약년월일”로 하고, “기지정자”를 “기계약자”로 한다.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중 “지정번호” 및 “지정년월일”을 “계약번호” 및 “계약년월일”로 하고, “지정인”을 “계약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판매인 지정) ①증지는, 사장, 구청장, 동장이 <u>지정한 판매인</u>(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p> <p>②<u>시장, 구청장, 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u></p> <p>③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u>지정을</u>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u>지정할 수 있다.</u></p> <p>④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u>지정이</u>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판매인 계약) ①.....<u>계약한</u>.....</p> <p>②삭제</p> <p>③.....<u>계약을</u> <u>계약</u>.....</p> <p>④.....<u>계약</u>.....</p>
<p>제8조(판매인의 결격요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u>지정할 수 없다.</u></p> <p>1., 2., 3., 4. 생략</p>	<p>제8조(판매인의 결격요인)<u>계약</u>..... 1., 2., 3., 4. 현행과 같음</p>
<p>제9조(판매인 지정 신청) ①판매인 <u>지정을</u>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u>지정신청서</u>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 부천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u>지정</u>은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u>지정</u>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u>지정받고자</u>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u>인감계와</u>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u>인감계</u>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조(판매인 계약 신청) ①.....<u>계약을 하고</u> <u>자</u><u>계약신청</u> <u>서</u>.....<u>계약</u>.....<u>계약</u> <u>은 구청장, 동장에게</u>.....</p> <p>②.....<u>계약하고자</u> 한<u>주민등록증사본</u>.....<u>주민등록증사본</u>.....</p>

현행	개정안
<p>③시장, 구청장, 동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장소를 시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p>③.....<u>계약</u>.....<u>계약서</u>.....</p>
<p>④구청장, 동장이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p>	<p>④.....<u>계약</u>.....</p>
<p>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시장이 지정하는</u> 판매장소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u>시장과 계약한</u>.....</p>
<p>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u>계약서</u>.....<u>시장</u>, <u>구청장</u>, 동장에게.....</p>
<p>제13조(지정의 취소) ①시장, 구청장, 동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u>그 지정을 취소</u>하여야 한다.</p>	<p>제13조(<u>계약의 해지</u>) ①.....<u>그 계약을 해지</u>.....</p>
<p>②지정판매인이 이 조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②<u>계약판매인</u>.....</p>
<p>③구청장, 동장은 판매인 <u>지정을 취소</u>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p>	<p>③.....<u>계약을 해지</u>.....</p>
<p>제17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변상책임)<u>계약</u>.....</p>
<p>제25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하여 <u>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u>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제25조(증지의 환매) ①.....<u>판매의 폐지 및 계약의 해지</u>시.....</p>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판매에관한계약체결신청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이 부천시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신청하오니 판매인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판매소 예정위치

(에서 미터)

2. 직 업

3. 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증사본 1부 및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입증지판매인계약서

성명 :

부천시수입증지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계약함.

1. 수입증지판매소 계약위치

(에서 미터)

2. 직 업

년 월 일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명의(위치)변경신청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기 계 약 자	판 매 소 위 치		명의 (임차) 변경 요구자	판 매 소 위 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명의(위치)변경사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입증지판매()신고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약인	소재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월일				
신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부천시장 귀하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개정

- 법률 제5695호(99. 1. 29)
- 주요내용 :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 ⇒ 판매인 계약제

□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재정경제부령 제81호(99. 5. 17)
- 주요내용 : 판매인 계약체결신청시 구비서류 완화
신청인의 인감계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신청인의 인감계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으로 개정하여 행정규제 정비코자 함.